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 2024.6.13.(목)10:00 ]

#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도시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장홍용 〉

## 1. 안 건 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 2. 안건번호

가. 의안번호 : 제24-77호

## 3.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24년 5월 24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4. 회부일자

가.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

## 5.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 I

## 예산규모

### 1 마포구 추경예산안 총괄

- 마포구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957억 6,84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477억 8,945만 5천원 대비 479억 7,899만 2천원(5.66%)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8,561억 3,988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02억 800만 8천원(6.23%)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396억 2,856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2901만 6천원(5.33%) 감소하였음.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895,768,447	847,789,455	47,978,992	5.66%
일 반 회 계	856,139,885	805,931,877	50,208,008	6.23%
특 별 회 계	39,628,562	41,857,578	△2,229,016	△5.33%
의 료 급 여	657,976	580,000	77,976	13.44%
마 농 수 산 물 시 장	7,417,005	6,323,221	1,093,784	17.30%
주 차 장	24,865,427	28,595,749	△3,730,322	△13.05%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809,811	5,579,977	229,834	4.12%
건 축 안 전	878,343	778,631	99,712	12.81%

## 2 복지동행국 추경예산안 총괄

-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3,360억 5,869만 3천원이며, 세출 규모는 4,442억 4,180만 3천원으로 마포구 전체 추경 예산의 37.52%이며, 복지동행국 최종 예산은 금번 추경편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7%가 증가되었음.

### □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36,058,693	334,378,420	1,680,273	0.50%
일 반 회 계	335,400,717	333,798,420	1,602,297	0.48%
특 별 회 계	657,976	580,000	77,976	13.44%
의 료 급 여 기 금	657,976	580,000	77,976	13.44%

### □ 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가경정예산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444,241,803	432,266,213	11,975,590	2.77%
일 반 회 계	443,540,300	431,686,213	11,854,087	2.75%
특 별 회 계	701,503	580,000	121,503	20.95%
의 료 급 여 기 금	657,976	580,000	77,976	13.44%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43,527	0	43,527	순증

## II 복지동행국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354억 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37억 9,842만천원 대비 16억 229만 7천원(0.48%) 증가하였음.
- 전체 세입예산의 0.29%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입의 99.71%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3,344억 1,548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229만 7천원 증가하였음.

#### □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35,400,717	100.00%	333,798,420	1,602,297	0.48%
세 외 수 입	985,233	0.29%	985,233	0	0.00%
보 조 금	334,415,484	99.71%	332,813,187	1,602,297	0.48%
국 고 보 조 금 등	203,206,232	60.59%	202,663,320	542,912	0.27%
시·도비보조금등	131,209,252	39.12%	130,149,867	1,059,385	0.81%

#### □ ‘조직별’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안	구성비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합 계	335,400,717	100%	333,798,420	1,602,297	0.48
복지정책과	10,431,199	3.11%	10,411,640	19,559	0.19
장애인사회보장과	97,743,905	29.14%	97,527,532	216,373	0.22
어르신동행과	118,112,934	35.22%	118,178,453	△65,519	0.06
가족행복지원과	5,175,283	1.54%	5,226,646	△51,363	0.98
아동보육과	103,937,396	30.99%	102,454,149	1,483,247	1.45

## 2 일반회계 세출예산

○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4,435억 4,0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16억 8,621만 3천원 대비 118억 5,408만 7천원(2.75%) 증가하였음.

### □ 조직별 세출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1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률 (%)
	1회 추경안	구성비			
합 계	443,540,300	100%	431,686,213	11,854,087	2.75%
복지정책과	18,717,493	4.22%	18,276,140	441,353	2.41%
장애인사회보장과	122,577,381	27.64%	117,902,401	4,674,980	3.97%
어르신동행과	151,789,473	34.22%	150,630,592	1,158,881	0.77%
가족행복지원과	12,030,897	2.71%	11,500,456	530,441	4.61%
아동보육과	138,425,056	31.21%	133,376,624	5,048,432	3.79%

○ 제1회 추경안 기준 증감액이 가장 큰 부서는 아동보육과(50억 4,843만 2천원)이며, 다음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46억 7,498만원), 어르신동행과(11억 5,888만 1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재원 구분	사업명 (통계목명)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합계	국비 등	시비	구비	
<b>복지정책과 (2건)</b>		1,359,417				
자체	복지행정 기능강화 (시설비)	25,000	-	-	25,000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비
자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공사공단 전출금)	28,000	-	-	28,000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b>장애인사회보장과 (6건)</b>						
자체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시설비)	200,000	-	-	200,000	공사비
자체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 (자산취득비)	150,000	-	-	150,000	운동기기 구매 및 설치
자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8,000	-	-	18,000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매칭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33,810	93,524	84,171	56,115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국 40%, 시 36%, 구 24%)
매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33,660	10,098	11,781	11,781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 원 기능보강비 (국 30%, 시 35%, 구 35%)
자체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시설비)	252,000	-	-	252,000	설계비
<b>어르신동행과 (2건)</b>						
자체	효도밥상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2,000	-	-	2,000	효도밥상 전기차 유지비
매칭	효도밥상 운영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9,000	5,800	1,330	41,870	효도밥상 전기차 구매

재원 구분	사업명 (통계목명)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편성 사유
		합계	국비 등	시비	구비	
<b>아동보육과 (8건)</b>						
매칭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00	1,800	2,100	2,100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급 (국 30%, 시 35%, 구 35%)
매칭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4,000	-	7,000	7,000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 (시 50%, 구 50%)
자체	보육종사자 워크숍개최 (행사운영비)	30,000	-	-	30,000	보육종사자 워크숍 개최
자체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전산개발비)	12,000	-	-	12,000	시간제보육 홈페이지 구축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3,580	-	-	103,580	인건비 93,980천원 운영비 9,600천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0,000	-	-	160,000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비 (3개소)
자체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7,367	-	-	7,367	공공요금(무인경비 등)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35,000	-	-	35,000	건축기획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금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13억 5941만 7천원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

- 실뿌리복지센터간판설치비는 마포형 동 단위 복합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인 실뿌리복지센터의 ‘1동 1 실뿌리복지센터’ 추진에 따른 신설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비(3개소: 망원2동, 대흥동, 아현동)로 2,500만원 편성

-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설치는 마포함께이룸센터(마포구 월드컵로1길 14)를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센터를 조성하고자 공사비 2억원, 운동기기 구매 및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편성



-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사업은 시 사업으로 진행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관련 예산 확정 통보를 반영하여 2억 3,381만원을 편성
-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는 마포요양병원(마포구 성산로 4길 33)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이 문화·예술·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억 5,200만원 편성
-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은 부모의 불가피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하여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공간을 조성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구축 1,200만원, 인건비 9,398만원, 운영비 960만원, 총 2억 7,558만원을 편성
- 그 외에도, 효도밥상 전기차 구매 4,187만원, 보육종사자 워크숍개최 3천만원, 상수 실뿌리복지센터 운영 4,236만 7천원 등을 편성하였음.

## □ 주요 증감 사업

(단위 : 천원)

재원 구분	사업명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편성사유
<b>복지정책과</b>					
매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81,731	1,153,747	27,984	사랑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운영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b>장애인사회보장과</b>					
매칭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6,298,206	6,128,814	169,392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반영
매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0	47,230	△47,230	-사업운영방식(거점) 변경에 따른 확정통보 반영

자원 구분	사업명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편성사유
매칭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1,777,944	1,732,948	44,996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운영 예산 확정통보 반영
자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127,003	109,003	18,000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운영 -인건비: 10,000천원 -사업비: 8,000천원
<b>어르신동행과</b>					
매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158,386	3,275,890	△117,50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 력 인건비 및 사업비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매칭	경로당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2,250	272,503	49,747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에 따른 부식비 반영
매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7,960	110,263	47,697	경로당 양곡비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양곡 단가 인상 및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에 따른 양곡 추가 지원
매칭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시설비)	1,118,968	1,718,968	△600,000	-특교세 교부액분 공사비 감액
<b>가족행복지원과</b>					
매칭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민간위탁금)	242,318	367,664	△125,346	-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매칭	가족행복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208,100	376,300	△168,200	엄마아빠택시 이용 -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매칭	가족행복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304,000	258,400	45,600	서울형 가사서비스 -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 (가사서비스 횟수 증가)
매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536,400	356,400	180,000	친인척 돌봄비 -지원비 신청 수요 증가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변경 통보 반영 (시 50%, 구 50%)

재원 구분	사업명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편성사유
<b>아동보육과</b>					
매칭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위탁사업비)	223,000	80,000	143,000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서울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구 비 반영 (국 50%, 시 25%, 구 25%)
자체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민간위탁사업비)	181,500	48,000	133,500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전환 (2개소) 시설 보수
매칭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680,333	2,280,920	399,413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금 확정통보 반영
매칭	부모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297,800	28,023,083	274,717	부모급여 지원 -보조금 확정 통보 반영 (단가 인상)
매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0	50,377	△50,377	육아지원코디네이터 운영 -시비 보조금 미편성에 따른 전액 감편성

○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은 2024년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여 1억 6,939만 2천원 증액 편성
-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추진에 따른 부식비 추가 지원으로 4,974만 7천원 증액 편성
-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은 양곡 단가 인상과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에 의한 양곡 포수 추가 지원으로 4,769만 7천원 증액 편성
- 합정동 실뿌리 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2023년 말 특교세 6억원이 교부되어 2024년 본예산 시설비 17억 6,873만 8천원 중 6억원을 감액 편성
- 가족행복지원사업(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사돌봄공백 가정에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 증가(4회→6회)에 따른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4,560만원 증액 편성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대비 초과 신청으로 인한 서울시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른 시·구비를 반영하여 1억 9,080만원 증액 편성
- 구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기능보강사업 선정 심의 결과( '24.4.)에 따라 국·시·구비를 반영하여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 부모급여지원은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여 2억 7,41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증·감액사업 대부분 '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 구 자체재원 사업으로 ,
- 발달장애인지원사업(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운영)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1명, 시간제) 1천만원, 사업비 8백만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
-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통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시설보수를 위해 1억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3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7억 150만 3천원으로, 기정액 5억 8,000만원 대비 1억 2,150만 3천원(20.95%)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6억 5,797만 6천원으로 7,797만 6천원 증가
  -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97만 6천원 편성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4,352만 7천원 순증
  -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4,352만 7천원 편성

(단위 : 천원)

특별회계 (부서)	1회 추경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계	701,503	580,000	121,503	20.95%	
의료급여기금 (장애인사회보장과)	657,976	580,000	77,976	13.44%	(세입) - 순세계잉여금 - 보조금 사용잔액 (세출) -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료급여지원 사업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아동보육과)	43,527	0	43,527	100%	(세출) - 구립어린이집개보수 3개소(노고산, 도화, 성미)

### Ⅲ 검토의견

-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세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통보액 등의 증액분 등을 반영하였고,
  - 세출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분 등을 반영한 사업과 공약 사업,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 등의 제·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사업들의 여건 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을 위해서는 **예측불가능성**(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시급성**(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일 것)이 요구되며,
- 추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사업계획 누락이나 사전준비 미흡으로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시급성을 가진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와 질의응답을 통해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며, 연내 집행은 가능한지 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하여, 당초 기대한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